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749만 2천원
- 징수결정액 : 977만 7천원
- 실제수납액 : 977만 7천원
- 미수납액 : 0원
- 결손처분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전년도 48.4%)임.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7,492	9,777	9,777	0	100
세외수입	7,492	9,777	9,777	0	100
임시적세외수입	7,492	9,777	9,777	0	100
과징금및과태료등	1,000	1,000	1,000	0	100
과태료	1,000	1,000	1,000	0	100
기타수입	6,492	8,777	8,777	0	100
그외수입	6,492	8,777	8,777	0	1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15억 9,223만 9천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15억 9,223만 9천원

○ 지출액 : 13억 3,117만 3천원

○ 이월액 : 0원

○ 불용액 : 2억 6,106만 6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6.4%(전연도 8.4%)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백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 5천 6백만원임.

〈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율 (%)
총 예산	1,592,239	1,331,173	0	261,066	16.4%
사업예산계	1,089,938	856,092	0	233,846	21.5%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399,312	264,807	0	134,505	33.7%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399,312	264,807	0	134,505	33.7%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18,000	11,051	0	6,949	38.6%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351,243	223,998	0	127,245	36.2%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30,069	29,759	0	310	1.0%
시정 청렴도 향상	217,552	171,375	0	46,177	21.2%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율 (%)
	시정 청렴도 향상	217,552	171,375	0	46,177	21.2%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56,650	119,615	0	37,035	23.6%
	청렴도 평가 및 청렴사책 평가시상	45,200	36,840	0	8,360	18.5%
	온라인채널채널사상유지추진	15,702	14,920	0	782	5.0%
	안전도시 서울 구현	108,110	100,818	0	7,292	6.7%
	안전특위정기점검및안전해인사건재기	108,110	100,818	0	7,292	6.7%
	명예시민호민관 운영	39,940	36,160	0	3,780	9.5%
	안전일상감사및하도급감사활동강화	68,170	64,658	0	3,512	5.2%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364,964	319,092	0	45,872	12.6%
	공익행동방범비행로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223,300	212,715	0	10,585	4.7%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5,000	5,000	0	0	0.0%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6,360	65,616	0	744	1.1%
	공약제보 활성화 및 공약제보자 지원	151,940	142,099	0	9,841	6.5%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91,880	61,291	0	30,589	33.3%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91,880	61,291	0	30,589	33.3%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 운영	49,784	45,085	0	4,699	9.4%
	기강감찰 운영	49,784	45,085	0	4,699	9.4%
	일 반 예 산 계	502,301	475,081	0	27,220	5.4%
	기본경비	502,301	475,081	0	27,220	5.4%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청백-e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운영관련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할 대행사업비 부족분해소를 위해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운영’(사무관리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통계목간 1백만원을 전용하였음.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현원변동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 ‘감사 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사무관리비→특정업무경비)

162천원

- 현원변동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 ‘조사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사무관리비→특정업무경비)

737천원 등

총 2건에 899천원을 전용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사항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사항 없음.

3. 기 금 결 산 : 해당사항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5. 채 무 결 산 : 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7년도말 감사위원회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69개,
현재액 121,226천원

〈 2017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구분	2016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69	11	0	11	0	11	11	69
	금액	129,659	12,595		12,595	0	21,028	21,028	121,226
일반 회계	수량	69	11	0	11	0	11	11	69
	금액	129,659	12,595		12,595	0	21,028	21,028	121,226

Ⅱ . 검토 의견

1. 세입결산

-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의 세입은 전년(1천만원) 대비 25.8%가 감소된 749만원이며,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세입예산 편성액(749만원) 대비 30.4% 증액된 97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음.

〈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 현황 〉

(단위 : 원)

조직 / 과목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7,492,000	9,772,000	9,777,700	-
감사담당관	2,389,000	8,777,700	8,777,700	-
세외수입	2,389,000	8,777,700	8,777,700	-
임시적세외수입	2,389,000	8,777,700	8,777,700	-
그외수입	2,389,000	8,777,700	8,777,700	-
조사담당관	5,103,000	1,000,000	1,000,000	-
세외수입	5,103,000	1,000,000	1,000,000	-
임시적세외수입	5,103,000	1,000,000	1,000,000	-
과태료	1,000,000	1,000,000	1,000,000	-
그외수입	4,103,000	-	-	-

- 자체수입을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첫째, 수입원별로 전망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둘째,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고, 셋째,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의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원칙¹⁾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4조(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 감사위원회는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세입을 편성하지 않고, 최근 4년간 세입금액의 평균액으로 세입을 편성하였고, 그 중 3개 항목(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의 집행잔액 반환수입, 환수사유가 있는 수당 및 급여 등)은 각각 수입원별로 예산을 각각 추계하지 않고, 일괄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 결과 감사담당관의 '그외수입'의 편성(238만원) 대비 결산률은 367.4%(878만원) 수준으로 과다하고, 조사담당관의 '그외수입'은 편성(510만원) 대비 결산률이 19.6%(1백만원) 수준으로 과소한바, 감사위원회의 세입예산편성과 세입징수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그외수입' 현황〉

(단위 : 천원)

조직 / 과목	예산편성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일	편성액 대비 수입액
합 계	7,492	9,772	9,777	-	130.4%
감사담당관	2,389	8,777	8,777	-	367.4%
그외수입	2,389	8,777	8,777	-	367.4%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352	352	2017.01.18.	301.9%
부양가족 변동미신고 가족수당 반납	2,389	260	260	2017.10.12.	
과년도 급여 과다지급액 반납		6,600	6,600	2017.02.15.	
소송비용 확정결정 회수	-	1,565	1,565	2017.04.10.	
조사담당관	5,103	1,000	1,000	-	19.6%
그외수입	4,103	-	-	-	-
소송비용 환수	3,957	-	-	-	-
공익제보 보상금 상환	146	-	-	-	-

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 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소송비용 확정환수’는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2017회계연도부터 조사담당관은 세입(396만원)으로 편성했으나, 조사담당관이 징수결정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에서 징수결정(1백만원)하는 등 세입추계 및 세입관리가 적정하고 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소송비용환수 관련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	7,544	-	-	3,770	3,770	3,957	1,565

- 또한 감사담당관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누락없이 세입예산을 편성’하라는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²⁾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6회계연도에 다음연도로 이월한 세입예산(635만원)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이 금번 결산에 누락되었고, 징수실적이 저조(2014년의 이월된 세입 6백만원 체납 상태)하므로, 감사위원회는 세외수입 결산 연속성 확보 노력과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대한 책임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결산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감사위원회는 비징수담당관 부서로, 이월된 세입은 재무국에서 결산하도록 하고 있어, 전년도 이월 세입은 당해연도 결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비징수관의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결산을 재무국(세무과)에서 업무의 소관 부서로 이관할 계획을 2016년 8월에 수립³⁾하고, 비징수관 지난연도수입 결산을 변경할 시점에 이미 2017년 본예산이 다 편성이 된 시점이어서 2018년 본예산 편성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2) 2017 예산편성 잠정기준. 서울시. 2017, 22p

3) 비징수관 지난연도수입 결산기준 변경 계획(2016.8.18.,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6호, 세무과-18077)

〈최근 5년간 다음회계연도 이월액의 세입조치 및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다음연도이월액	조치내역
2017	9,777	9,777	0	
2016	12,317	5,967	6,350	· 2017.7월 완납처리됨
2015	7,676	7,676	0	
2014	14,095	3,253	10,842	· 2014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총4건 10,842,460원이고, · 2건 4,757천원 2016년 4월 완납 · 2건 6,085,000원 체납 상태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완료하였고, 향후 후속절차 진행 시 참여하여 완납조치 할 예정임.
2013	8,604	4,087	4,516	· 2014.5월 완납

2. 세출예산

- 감사위원회는 총 15억9천2백만원의 세출예산 중 13억3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이용·이체·다음연도이월·예비비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1건(1백만원), 변경사용 2건(90만원) 등으로, 예산 현액대비(15억9천2백만원) 불용률은 16.4%(2억5천6백만원)수준임.

가. 예산 불용율 과다

-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불용률(집행잔액 2억5천6백만원)은 예산현액(15억9천2백만원) 대비 16.4%(2억5천6백만원)로 전년(8.4%) 대비 8.0%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2.3%)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위원회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감사위원회 예산 불용률〉

(단위: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5.3%	7.9%	8.3%	8.4%	16.4%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 20%이상 예산불용 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사무관리비	5,000	-	5,000	100.0%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업무추진비	7,000	5,050	1,950	27.8%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제고	사무관리비	257,929	131,204	126,725	49.1%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외업무여비	25,000	15,036	9,964	39.9%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포상금	13,400	5,156	8,244	61.5%
청렴도평가 및 청렴시책평가	포상금	5,200	3,800	1,400	26.9%
기강감찰 운영	공공운영비	12,284	7,585	4,699	35.2%
공직자재산등록사무처리	사무관리비	86,880	56,291	30,589	38.3%

1)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사업 예산의 불용

-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사업은 공직기강 점검 및 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워크숍 비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특별 점검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사무관리비(5백만원)’는 전액을, ‘시책업무추진비(7백만원)’는 27.8%(194만원)를 불용처리하였음.

〈 “자율적 공직기강확립 유도” 통계목별 집행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18,000	11,050	6,949	38.6%
사무관리비	5,000	0	5,000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5,050	1,949	27.8%
포상금	6,000	6,000	0	0.0%

- 감사위원회는 계획에 없던 감사(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퇴직건설기술자 경력 신고 특별점검 등) 추가로 연말에 계획했던 공직기강 관련 워크숍을 실시하지 못한 것을 불용의 사유로 제출하고 있음.

〈 “자율적 공직기강확립 유도” 세부 산출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 = 5,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공직기강 확립추진 = 7,000천원

-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은 공직기강 확립방안 발표 및 토론, 공무원 행동강령 강의 등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감사계획 외 감사로 워크숍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감사위원회 내에서 워크숍의 필요성이 저평가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동안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워크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2) “감사활동의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사업 예산의 불용

- 공익감사단 등 외부전문가 감사참여를 통해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사업인 “감사활동의 지원 및 감사 투명성 제고” 사업 중 ‘사무관리비(2억 5천8백만원)’는 49.1%(1억2천7백만원)를 불용처리 하였음.

〈 “감사활동의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의 통계목별 집행 현황 〉
(단위:천원)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351,405	223,997	127,243	36.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143	18,891	251	1.3%
사무관리비	258,000	131,204	126,633	49.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00	28,165	335	1.2%
특정업무경비	45,762	45,737	24	0.1%

- 불용처리한 ‘사무관리비’는 공익감사단(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의 수당으로, 계획에 없던 감사(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퇴직건설기술자 경력신고 특별점검 등) 추가로 시비보조사업 모니터링을 축소하였다고 하고 있음.

〈 “감사활동의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의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 현황 〉

- 감사위원회 운영 = 48,000천원
- 외부전문가(공익감사단) 감사 참여 = 200,000천원
 - 공익감사단 감사참여 수당200,000원*50명*10일*2회 = 200,000천원
-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워크숍 = 10,000천원

- 본 사업은 ‘공익감사단 확대 구성·운영 계획(2016.11)’에 따라 공익감사단을 최종 83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예산은 50명을 기준으로 편성했고,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다는 점은 감사위원회가 본 사업을 통해 감사역량 강화보다는 양적확대를 통한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중한 것은 아닌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했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감사위원회는 면밀한 계획 및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합리적인 사업운영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각별한 노력과 함께 내실있는 감사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제출된 결산서의 부속서류 중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감사계획 외의 추가적인 감사로 인해 사전 계획된 감사 또는 사업을 축소 내지 실행하지 않았거나, 조사담당관에서 실행해야 할 감사계획 외의 감사를 감사담당관이 기존의 사업을 축소하면서 감사를 실행하는 등 성과주의 예산 및 결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3)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의 불용

- 청렴시책 전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는 39.9%(1천만원), 포상금은 61.5%(824만원)를 불용처리하였음.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의 통계목별 집행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156,650	119,615	37,035	23.6%
사무관리비	108,750	91,042	17,708	16.3%
국외업무여비	25,000	15,036	9,964	39.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0	8,380	1,120	11.8%
포상금	13,400	5,156	8,244	61.5%

- 감사위원회는 불용사유를 국외업무여비의 경우는 현안업무 발생에 따른 ‘국외출장 미시행(국외업무여비)’으로, ‘하정청백리상’(대상 수상자 미선발) 포상금의 경우는 ‘적격자 없음’으로 포상금을 불용되었다고 하고 있음.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현황(2017.10.31.기준)과 결산현황을 비교해보면, 본 사업의 예산액 중 67.3%, 사무관리비는 83.2%를 연말에 집행하였는바,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연말 몰아치기식 예산집행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청렴의식 향상이라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 장기적 사업추진 등 감사위원회의 합리적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의 시기별 집행 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17년 10월말 기준				2017결산 불용률	불용률 차이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소 계	156,650	14,190	142,460	90.9%	23.6%	67.3%
사무관리비	108,750	500	108,250	99.5%	16.3%	83.2%
국외업무여비	25,000	2,616	22,384	89.5%	39.9%	49.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0	7,918	1,582	16.7%	11.8%	4.9%
포상금	13,400	3,156	10,244	76.4%	61.5%	14.9%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중 ‘사무관리비’의 사업추진 일정 〉
(단위: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청렴교육 계획수립	2017.01~2017.01		
청렴교육 교재 제작	2017.01~2017.02	3,750	
공직사회 혁신 캠페인 추진	2017.01~2017.12	45,000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청렴교육 영상 제작	2017.01~2017.05	35,000	·이해충돌 및 부정청탁 방지 교육영상 제작 등
청렴교육 교육실시	2017.03~2017.12	2,000	·본청, 투자출연기관 청렴교육
홍보포스터 제작 계획수립	2017.04~2017.04		
홍보포스터 제작 완료	2017.06~2017.06	3,000	·홍보물 제작비
청탁금지법 사례집 발간	2017.06~2017.12	20,000	

4) “기강감찰 운영”사업예산의 불용

- “기강감찰 운영”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위한 사업이며, 기강감찰팀의 차량 연료비인 ‘공공운영비’는 불용률이 38.3%(집행잔액 470만원) 수준임.

〈 “기강감찰 운영”의 통계목별 집행 현황 〉

(단위:천원)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소계	49,784	45,085	4,699	9.4%
사무관리비	25,500	25,500	0	0.0%
공공운영비	12,284	7,585	4,699	38.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12,000	0	0.0%

- 기강감찰팀의 공공운영비(차량연료비)는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이 41.9%이며, 유가하락과 감찰환경의 변화(원거리→근거리)를 불용사유로 제출하고 있음.

〈 “기강감찰 운영” 중 ‘공공운영비’의 최근 5년간 불용률 현황 〉

(단위:천원)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14,075	14,523	14,523	14,523	14,523	12,284
집행액	8,240	12,378	8,646	7,472	5,121	7,585
불용액	5,835	2,145	5,877	7,051	9,402	4,699
불용률	41.9%	15.3%	40.5%	48.6%	64.7%	38.3%

〈 최근 4년간 “기강감찰 운영” 중 ‘공공운영비’의 불용사유 〉

- 2017년 불용사유 : 공직기강 감찰활동 여건 변동 등에 따른 예산집행 저조(지속적인 유가 하락 및 차량운행 감소, 본청 및 서소문 별관에 대한 감찰강화)
- 2016년 불용사유 : 1ℓ 당 1,985원이었던 단가가 1,309원으로 유가 대비 30%이상 하락하여 예산 집행이 저조하였음.
- 2015년 불용사유 : 유가 급락(14년 단가 1,666원/L 대비 203원/L (12.2%)하락) 및 감찰환경 변화(원거리-)근거리)에 따른 집행잔액
- 2014년 불용사유 : 동 예산은 차량연료비로서 예산편성당시 리터당 2,017원(휘발유)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유가하락 등의 사유로 비용이 절감된 측면이 있음

- 한편, 감사위원회 기강감찰팀 차량(3대, 준중형)의 운행내역(운행거리 및 주유량)과 불용사유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감찰환경(감찰차량 1일평균 이동거리가 46km 감소)의 변화는 2015년이 아닌 2014년에 있었고, 매년 불용사유로 제출되었던 주유가액의 급락은 2015년도에만 17.2% 수준의 하락이 있었으며, 매년 평균 7% 내외의 변동으로, 2017년도 주유가액은 오히려 상승하였음.

〈 기강감찰팀 차량 운행내역〉

구분	5년 평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주 유 량 (ℓ) ①	4,960	6,433	4,732	4,938	3,653	5,043
총 운 행 거 리 (km) ②	49,600	64,335	47,322	49,385	36,525	50,433
예산 집행액 (천원) ③	8,240	12,378	8,646	7,472	5,121	7,585
1L당 평균 주유액(원, ③÷①)	1,634	1,924	1,827	1,513	1,402	1,504
전년대비 주유액 변동률	△5.57%	-	△5.0%	△17.2%	△7.4%	7.3%
1천원당 주행거리(km, ②÷③)	6.2	5.2	5.5	6.6	7.1	6.6
1L당 주행거리(km, ②÷①)	10	10.001	10.000	10.001	9.999	10.001
1일 운행거리(km, ②÷365)	136	176	130	135	100	138

※ 참고 - 최근 5년간 서울 및 전국 평균유가

서울시 평균유가(원)	1,720	2,002	1,914	1,596	1,500	1,589
전년대비 유가 변동률	△5.3%	-	△4.4%	△16.6%	△6.0%	5.9%
전국 평균유가(원)	1,632	1,924	1,826	1,512	1,405	1,495
전년대비 유가 변동률	△5.7%	-	△5.1%	△17.2%	△7.1%	6.4%

- 출처 : Opinet(<http://www.opinet.co.kr>)

- 기간별 : 2013~2017년, 일별 평균가격 기반으로 연간 평균 유류가격을 산출

- 제품별 : 보통휘발유의 평균값(고급휘발유, 경유, 등유 등은 제외)으로 산출

- 지역별 : 서울지역(25개 자치구) 및 전국(17개 광역시도) 평균 판매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으로 산출

- 형태별 : 정유사별 셀프/비셀프, 직영/자영 및 알뜰주유소를 포함한 평균가격으로 산출

- 공공운영비(차량연료비) 불용의 원인이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유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전례답습적 예산 과다편성, 부적정한 예산 운용 또는 기강감찰 활동의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배분을 위하여 지속·반복되는 불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예산 전용

- 감사위원회의 전용은 총 1건으로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하 '청백e-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할 대행사업비 부족분해소를 위해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운영” 중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대행사업비’로 1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중 전용 현황 〉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지출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3,000	-	1,000	2,000	1,890	5.5%
	공기관등에 대한 정상적 대행사업비	20,069	1,000	-	21,069	21,069	0.0%

- 청백e-시스템 운영예산은 ①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관련 서울시 분담금 (1,461만원)과 ②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645만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산과정에서 계산착오로 1백만원 적은 2천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전용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바, 향후 이와 같은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7년 청백-e시스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예산 〉

(단위:천원)

내역	금액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대한 서울시 분담금	14,615
전산장비에 탑재되어 있는 상용S/W 유지보수비	6,454
합계	21,069
2017년 회계연도 예산편성액	20,069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예산편성액 간 차액	1,000

※ 청백e-시스템은 업무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자동으로 경보를 발송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착오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 본 시스템이 보완 내지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다. 변경 사용

- 현원변동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 “감사 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16만원을, “조사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74만원 등 2건을 변경 사용하였음.

〈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예산 변경 현황 〉

(단위: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무관리비	258,000	162		257,838	131,204	126,633	49.1%
	특정업무경비	45,600		162	45,762	45,737	24	0.1%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사무관리비	10,000	737		9,263	8,520	743	8.0%
	특정업무경비	45,360		737	46,097	46,096	1	0.1%

- 2017회계연도 예산편성시 감사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은 각각 47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감사담당관은 3개월간(2017.2.~5.), 조사담당관은 하반기(2017.7.~12., 정기인사 및 지원근무 발령 등)부터 48명으로 현원이 증가하여 특정업무경비 부족분이 발생하였음.
- ‘특정업무경비’는 공무원들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지원하는 경비인 만큼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에 의한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예산을 감액·변경 사용한 사업의 경우는 추후 예산 심사 시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정 찬 일